국제개발협력위원회
제2차 회의 보고자료

ODA 추진 성과사례

- 국제빈곤퇴치기여금 및 해외긴급구호법

2007. 7.20

외 교 통 상 부

목 차

Ⅰ. 국제빈곤퇴치기여금 도입

1. 추진 경위 ····· 1

2. 주요 내용 ····· 3

3. 향후 추진계획 ····· 4

Ⅱ.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정

1. 추진 경위 ····· 5

2. 주요 내용 ····· 5

3. 향후 추진계획 ····· 8

Ⅰ. 국제빈곤퇴치기여금 도입

1. 추진 경위

가. 도입 배경

○ 2000년 유엔 정상회의시 전세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"천년개발목표(MDGs)" 채택

○ 2005.9월 최빈 개도국의 MDGs 달성지원을 위해 새로운 개발재원 발굴을 촉구하는 뉴욕선언문 발표(총 79개국 참여)

- 기존의 원조수단 외에 '항공권연대기금'(국제빈곤퇴치기여금의 국제 통칭) 등 혁신적 재원 발굴 촉구

☞ **국제빈곤퇴치기여금 개요**

○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개발재원으로 논의되어온 항공권연대기금(air-ticket solidarity fund)의 우리 명칭

- 국제선 항공권에 소액의 기여금을 부과, 동 재원을 원조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구체 방안은 도입 국가가 결정

○ 현재 프랑스, 영국, 칠레 및 아프리카 국가 등 총 20여개 국가가 도입(중국도 동 제도 도입 긍정적 검토중)

※ 동 방안은 개도국도 참여하고 있는 점이 특징

○ 2005.9월 유엔 정상회의시 대통령님, 국제사회의 빈곤과 기아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약속

○ 2006.3월 "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한국 이니셔티브" 발표

-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규모를 2008년까지 3배 증액

나. 국내적 입법절차

○ 2006.1～2월 국제사회의 빈곤퇴치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 관계부처 회의 6차례 개최

- 여러방안 중 '국제빈곤퇴치기여금' 도입에 모든 부처 공감

○ 국제빈곤퇴치기여금 도입 관련 국내 공감대 형성 노력

- 정부와 민간인사의 신문기고(29회) 및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 노력
- 국적 및 외국계 항공사 등 이해관계자 설득
- 초청 간담회 등 계기에 여론지도층 및 민간단체 등에 홍보

※ 기여금 도입에 관한 국민 반응
- 한겨레신문 온라인 폴(3.13～4.19, 총 1,546명 참여) : 68% 찬성
- 네이버 온라인 폴(5.14～6.9, 총 30,139명 참여) : 50.5% 찬성

○ 정부내 입법 추진 경과 :「한국국제협력단법」개정

- '06.6.13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및 '06.8.17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기여금 신설 타당성 심의·의결
- '06.8.31 차관회의 및 9.5 국무회의 의결/ 9.29 정부안 국회 제출

○ 국회 심의 경과

- '06.11.29 국회 통외통위 ⇒ '07.2.27 법사위 ⇒ '07.3.6 본회의 의결
- 외교통상부 고위간부들이 당정협의 및 의원별 직접 교섭을 통해 타당성 설명(특히 법리적 정당성 측면)

○ '07.3.29 개정 법률 공포

다. 국제적 공감대 형성에 적극 참여

○ '06.4월부터 '혁신적 개발재원에 관한 리딩그룹' 참여

- 현재 우리나라는 동 리딩그룹 의장국 수임중('07.3월～9월)

※ 동 리딩그룹은 총 52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새로운 개발재원 논의를 주도

○ ‘06.11월부터 국제의약품구매기금(UNITAID) 집행이사국 수임중

- 국제빈곤퇴치기여금 재원중 상당부분을 동 기금에 출연 추진

※ UNITAID는 개도국의 에이즈, 말라리아, 결핵치료를 위해 양질의 의약품을 저가로 공급하기 위한 재원마련을 목적으로 설치

2. 주요 내용

가. 기여금 도입내용 : 개정「한국국제협력단법」주요 내용

○ 국내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(내외국인 불문)에 대하여 1천원의 기여금 부과

○ 기여금의 부과·징수사무를 담당할 대행기관 지정, 기여금의 관리·운영은 한국국제협력단이 위탁 관리

○ 국제빈곤퇴치기여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

- 외교통상부장관을 위원장으로 11인 이내 구성
- 기여금 운용에 관한 주요정책 사항을 심의

○ 부과기간 : 개정「한국국제협력단법」시행후 5년간 부과

나. 기여금 도입의 기대효과

○ 범지구적 과제인 MDGs 달성에 참여하는 우리 국민의 자긍심 고취 및 인도주의 국가로서의 위상제고

- 우리의 ODA가 주로 아시아 지역에 편중된 바, 최빈 개도국의 빈곤 및 질병퇴치라는 인류보편적 가치에 무관심하다는 비판 불식

○ 또한, 2005.9월 유엔총회에서 천명한 빈곤과 기아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고, “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이니셔티브”를 구체화

- 우리는 국제사회의 지원을 통해 빈곤퇴치의 경험을 보유한 가장 적합한 국가라는 이점 보유

○ 아울러, 우리 ODA 규모의 현실적 제약에도 불구, 새로운 개발재원 발굴에 적극적이라는 이미지 부각

3. 향후 추진계획

가. 국제빈곤퇴치기여금 제도 도입을 위한 조치

○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개정

○ 대행기관과 기여금 부과·징수 대행약정 체결

○ ‘07.9.30 기여금 부과·징수 개시

나.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의 활용

○「기여금운용심의위원회」설치·운용 : ‘07. 9월중 제1차 회의 개최

- 기여금 활용원칙 및 기본방향, 연간 운용계획 등 확정

다. 국제적 공감대 형성에 적극 참여

○ “혁신적 개발재원에 관한 리딩그룹” 총회 개최 : ‘07.9.3～4, 서울

○ UNITAID 집행이사국 활동 : 한국 및 아시아의 의견 반영

Ⅱ.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정

1. 추진 경위

○ 2004년말 남아시아 지진해일 이후 대규모의 해외재난에 대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 필요성 대두

○ 2005.6월 정의용 의원,「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안」대표 발의

○ 2006.3월 제1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“해외긴급구호시스템 구축 방안” 채택

○ 국회 심의 결과
- ‘06.11.29 통외통위 의결
- ‘07. 2.27 법사위 의결
- ‘07. 3. 9 본회의 의결

○ 2007.3.29 “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” 공포

2. 주요 내용

가. 입법 취지

○ 해외에서 대규모 재난 발생시 재난 피해국에 대해 체계적이고 신속한 긴급구호 활동을 제공하기 위한 지원체계 마련
- 긴급 구호물품의 수송, 긴급구호대의 파견, 임시 재해복구 등
- 해외재난 발생시, 국제협력을 통한 해외재난지역의 인명구조 및 재난구호에 기여하고 나아가 인도주의와 인류애 정신 실현

나. 주요 법률 내용

○ 해외긴급구호대책의 수립

- 외교통상부장관은 평상시 해외재난에 대비하여 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, 구호물품·장비의 비축·보관·정비, 구호인력·물품의 신속한 소집·수송체계 구축 등이 포함된 해외긴급구호대책 수립

○ 민·관 합동 해외긴급구호 협의회의 설치·운영

- 정부는 대규모 해외재난시,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는 위원회를 소집, 해외긴급구호의 규모 및 방식, 관계부처(단체)와의 협조방안 등의 사항을 협의·결정
- 외교통상부장관은 협의회 결정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'해외긴급구호본부'를 설치·운영

○ 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

- 외교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외긴급구조대, 소방공무원, KOICA 국제협력요원 등으로 해외긴급구호대를 편성 및 파견

○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

- 외교통상부장관은 해외재난시 필요한 경우,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인력·장비·물품 및 수송장비 등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 요청

○ 해외긴급구호 종사자에 대한 지원 및 보상

- 외교통상부장관은 해외긴급구호에 참여하는 법인·단체 또는 사람들에게 경비의 전부 혹은 일부를 보조하거나 장비·물품 등을 제공
- 또한, 해외긴급구호 활동에 종사하다가 사망, 상해를 당한 사람 등에 대하여 보상하거나 치료비를 지원

다. 기대성과

⑴ 신속한 지원의사 결정을 위한 메카니즘 설치

○ 대형 해외재난의 초동대응을 위해 외교통상부 장관의 판단·결정으로 현금, 물자지원, 구호대파견 등 재난구호 제공

○ 대규모 해외재난시 범정부 차원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,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는 '민·관합동 해외긴급구호 협의회'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

- 외교통상부와 국방부, 소방방재청 등 관계부처간 원활한 협의체제 구축

⑵ 신속한 물자·인력의 동원 및 수송체계 구축

○ 장비·물품 등 물자의 신속한 동원을 위하여 소방방재청·한국보건의료재단·국립의료원 등 전문 구조·의료기관과 업무약정을 체결, 상시 대비

○ 민간항공사와 사전협조를 통한 전세기 동원·항공료 할인방안 및 국방부와 협조, 군수송기·수송함의 신속 지원 가능

○ 구호인력풀(Pool)의 구조·의료인력에 대한 사전교육 및 훈련 실시 등을 통한 동원인력의 전문성 확보

⑶ 해외재난 긴급구호단체의 참여 확보

○ 효율적인 국제재난긴급구호를 위해 해외원조단체협의회 및 NGO가 보유한 지식·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참여 확대

3. 향후 추진계획

가.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 추진

○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(안)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완료

○ 법제처 심사, 차관/국무회의 심사 등을 거쳐 ‘07.9.30부터 시행 예정

나. “해외긴급구호 매뉴얼” 마련

○ 정부차원의 “해외긴급구호 매뉴얼”을 마련, 관계부처·기관 및 해외구호단체 등에 배포 예정 /끝/